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 업무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업종**입니다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시설물유지관리업	950,392원	2억원	64좌 (60,825,088 원)	79좌 (75,080,968 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육안검사 장비: 돋보기 · 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① 반발경도 측정기 1대 이상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 · 체인 1대 이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다) 자기감응 검사장비 :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